

입 원 약 정 서

□건보 □급여 □산재 □자보 □일반

등록번호	진료과	진료의사	진단명
성 명	주민등록상 생년월일		성별/나이 병실
주 소			
증 번 호	피 보 험 자	연락처	

보 호 자	성 명	(서명 또는 인) (관계 :)	연락처(H.P)	
	주민등록상 생년월일	년 월 일 (남 / 여)	직장명	연락처
	주 소			

- 병원의 제반 규칙을 준수하고 의사, 간호사 또는 직원의 정당한 요구에 따르며,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퇴원 지시가 있을 때 이에 따릅니다.
-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진찰, 검사 및 치료에 동의하고, 응급상황에서 보호자의 부재 등으로 인해 사전 동의 없이 시행한 응급수술, 검사 등 응급 의료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, 수술 등 진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병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- 병원의 정당한 진료지침이나 교육에 반하는 무단외출·외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환자에게 있습니다.
- 병원의 비품 또는 기물에 손상을 입히거나 파손하였을 때 이에 대해 변상하고, 현금, 유가증권, 기타 귀중품은 도난의 우려가 있으므로 소지하지 않으며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귀 병원에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.
-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는 귀 병원에서 정하는 납부기한 내에 환자 및 보호자가 연대하여 납부하고, 체납될 때에는 채권 확보를 위한 귀 병원의 법적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.
- 보호자는 환자의 입원일로부터 퇴원시까지 발생한 진료비 및 기타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며, 보증채무의 최고액은 금 8,000만원으로 합니다.
다만, 환자의 진료비 등 채무가 위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다시 산정하는데 동의합니다.
- 입원기간 중 이루어진 진단, 검사, 치료 등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분쟁이 생겼을 때는 「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·중재를 신청하거나 「소비자기본법」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년 월 일 약정인 (보호자) : (서명) (관계 : 환자의)

병원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환자의 진료를 위한 목적과 진료비 청구 등의 목적으로 환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(이름, 생년월일, 주소, 연락처 등)를 수집 및 활용하고, 수집된 정보는 의료법이 정한 기간만 보유하며 그 기간이 만료될 때 동 약정서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는 방법 등으로 파기합니다. (단, 보관기간 만료 시 진료비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환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는 진료비 납부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보관 기간이 연장됩니다) 또한 환자 및 보호자가 진료비 등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당 병원은 채권추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등 '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'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채권추심을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채권추심을 위하여 환자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채권추심기관에 제공 할 수 있고 채권추심기관은 채권추심이 이루어지거나 당 병원이 채권추심 업무를 철회할 때까지 위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할 수 있습니다. (미동의 시 입원 불가 및 진료상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)

각종 검사결과, 진료내용 등의 의료정보는 환자의 진료를 위해 의료종사자가 공유할 수 있고, SMS 및 e-mail 등으로 수신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.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·활용·제공에 동의하십니까?

위 동의함 (예 아니오)

※ 19년 7월부터 입원진료시 부정수급 및 진료정보 왜곡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분증 확인제도가 실시됩니다.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진료비(공단부담금)전액을 환수하고 건강보험법 제115조에 의거하여 「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」에 처해질수 있습니다.
환자 신분증 확인 여부 (예 아니오)

※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입원사항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, 환자 본인 외에는 입원기간 동안 병실 호수 및 진료와 관련된 모든 서류 발급 (단, 의무기록 관련 서류는 관계법령 적용함) 및 문의사항을 안내하지 않습니다.

입원 사실 공개 여부 (예 아니오)

※ 보건복지부 「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」에 따른 비급여 사용 시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설명 후 사용한 비급여는 본인이 전액부담 하겠습니다.

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

상급병실 사용신청서	병실	기준병실료와의 차액	신청인
	()	원/일	(서명 또는 인) (관계:환자의)

※ 위와 같이 상급병실 사용을 신청하며, 병실료 차액은 본인이 전액부담하겠습니다.

구분변경	→	변경일	담당	구분변경	→	변경일	담당
------	---	-----	----	------	---	-----	----

결 재	입원	재원관리	파트장	팀장